

2014년 하반기이사회 의결 결과

하반기 정기이사회 의결사항

- 일 시 : 2014년 12월 30일 11:00~13:00
- 장 소 : 공주의료원 회의실(3층)
- 출석임원 : 이사 7인, 감사 1인
- 의결사항

의결사항	주요 내용	의결결과
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(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산규모 28,782백만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회추경예산 28,281백만원 대비 501백만원 증 ○ 세 입 : 28,782백만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예산 : 101백만원 증(응급의료기관평가 포상금 75, 노사파트너쉽교육비 26) - 자본예산 : 400백만원 증(정보화지원사업비-도비 400) ○ 세 출 : 28,782백만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예산 : 325백만원 증 (인건비 190, 관리운영비 202, 예비비△67) - 자본예산 : 176백만원 증(의료장비 176) 	원안가결
2015년 세입 세출예산(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산규모 28,876백만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14.당초예산 28,028백만원 대비 848백만원 증 ○ 세 입 : 28,876백만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예산 : 23,310백만원 (의업수익 20,692, 의료부대 918, 기부금 1,008, 기타 692) - 자본예산 : 105백만원(출연금 105) - 이월금예산 : 5,461백만원 (현금이월금 3,439, 의업미수금등 2,022) ○ 세 출 : 28,876백만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예산 : 21,003백만원 (인건비 10,190, 재료비 5,540, 관리운영비 3,572, 의료부대 497, 이자비용 374, 기타 281, 일반예비비 331, 봉급예비비 218) ※ 직책급업무추진경비 : 25,200천원 계상 - 자본예산 : 3,050백만원 (투자자산 376, 유형 자산 2,057, 고정부채상환금 617) - 과년도미지급금 : 4,823백만원 	조건부가결
정관개정(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21조(하부조직) ②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리부에는 관리팀, 원무팀을 둔다 → 관리부에는 총무과, 원무과를 둔다. ○ 제21조(하부조직) ③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병원의 팀단위 이상 → 병원의 과단위이상 	원안가결

의결사항	주요내용	의결결과
정관개정(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43조(보조금의요구및교부) ③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의 → <u>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의</u> ○ 제53조(상법및기타법령등준용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자치법,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. → <u>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</u>, 지방자치법,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. 	원안가결
직제규정 개정(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6조(하부조직) ①항, 제8조(관리부) ①항~③항, ⑤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리팀, 원무팀 → 총무과, 원무과 - 총무담당 등(5개 담당) → 총무계장 등(5개 계장)으로 명칭 변경 ※ 직제규정에서 ‘관리팀장’은 ‘총무과장’으로, ‘원무팀장’은 ‘원무과장’으로 개정됨에 따라 각 규정의 관리팀장은 총무과장으로, 원무팀장은 원무과장으로 일괄 개정 	원안가결
인사규정 개정(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3조(용어의정의) 6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리부의 관리팀과 원무팀을 말한다. → 관리부의 <u>총무과와 원무과</u>을 말한다. ○ 제4조(직종등) 별표 1(직원의 직급 및 직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사규정의 직종에 부합되도록 ‘기술직’ 신설 및 이에 따른 ‘기능직’ 조정과 일부내용 삭제 등 ○ 제37조(휴직) ②항 6호<신설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난임 및 불임 직원의 임신 시술을 위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 요구가 있을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’14년 노사단체협상 합의사항 ○ 제38조(휴직기간) ①항 8호<신설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37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 ○ 제57조(징계량의기준) ①항 4호 감봉의 보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그 감액은 1회 금액이 월평균보수의 1일분의 2분의 1일, 보수총액이 1보수지급기의 보수총액의 10분의 1일 초과하지 못한다. 	원안가결
보수규정 개정(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4조(기본급) ①항 <별표 1>개정 ○ 부칙 제2조(임금지급율) 기본급 - 연간 임금총액 지급률표(일반직 및 간호사) <별표 1-4> 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수총액 1.72%, 임금지급율 0.1%인상 ※ ’14년 노·사임금 단체협상 합의(15.1.1부터 적용) ○ 제16조(휴직기간중의보수) ③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무상외 질병에 대해 1년이내 병가 휴직에 대하여 기본급의 70%를 생계비로 지원한다. ※ 기존 : 기본급의 1/3지원(30만원 이내) 	원안가결

의결사항	주요내용	의결결과
보수규정 개정(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6조(휴직기간중의보수) ④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사규정 제37조의 제2항 6호에 의한 휴직(난임 및 불임 직원의 임신 시술)의 경우에도 봉급을 지급하지 않음(추가) ○ 제18조(결근자등의보수) ⑤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보수 금액은 1회 금액이 월평균보수의 1일분의 2분의 1일, 보수총액이 1보수 지급기의 보수 총액의 10분의 1일 초과하지 못한다. ○ 제26조(정근수당) ③항 감액지급(10%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감봉이상 → 정직이상으로 조정 ○ 제29조(시간외근무수당등) ①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호출수당, 대기당직수당 문구 삽입(신설) - <별표 7> 19호에 “1일에 콜이 2건이상시 두 번째 콜부터 30천원 지급(신설) ※ 첫 번째 콜 : 20천원 	원안가결
복무규정 개정(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14조(시업및종업) ①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상 근무시간 : 09시에 시작하여 18시까지 → 08시30분에 시작하여 17시30분까지 ○ 제28조(청원휴가) ①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2호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: 1일 - 18호 출산전후휴가 90일(한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할 경우에는 120일) 등 ○ 제31조(휴가기간중의휴일) ①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휴가기간중 휴일은 휴가기간에 산입하며, 사망의 경우 5일이하시 유급휴일은 휴가기간중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	원안가결
여비규정 개정(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4조(여비의계산) ②항 병원소유 교통수단 이용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비는 2분의1을 지급한다. ○ 제6조(여비일수의계산) ③항 <신설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명이상 출장시 상급자와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○ 제7조(출장지의구분) 1.호 다.목 <신설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내출장 4시간 이상 2만원, 4시간 미만 1만원 지급(공용차량이용시 1만원 감액 지급) 	원안가결

의결사항	주요내용	의결결과
원무규정 개정(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51조(보고사항) ④항 월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무팀 → 원무과로 변경 ○ 제54조(사채취급), 제55조(사채출반수속), 제56조(사채해부및부검), 제57조(영안실관리) <삭제> 	원안가결
약사위원회 규칙 개정(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주의료원약사위원회규칙 제2조(목적)~ 제9조(간사)의 조항 내용 전반에 대한 개정 	원안가결
직원근무 평정규칙 개정(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9조(직무태도감점) ②항 4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의, 훈계 0.5점 → 불문경고, 주의, 훈계 0.5점 ○ 제10조(근무성적평정의 예외) ②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육아휴직 포함 ○ 제13조(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) ①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본인에 한하여 공개 및 열람이 가능토록 하고, <u>이의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함</u>(②항 신설) 	원안가결
임직원 행동강령 개정(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2조(정의) 1호 마. 및 5호 <신설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무관련자 범위 확대 및 리베이트에 대해 정의 ○ 제18조(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) ③항 <신설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○ 제18조2(외부강의·회의등의 신고) ①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고 범위를 추가(학술대회, 제품설명회 등) 	원안가결
임직원 행동강령 개정(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25조(징계) ①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리베이트(금품)를 수수한 임직원에 대하여 반드시 징계조치 하여야 함 ○ 제27조(교육) ①항 개정 ③항 <신설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①항에 교육 결과를 기록·관리토록 명기 - ③항에 임직원의 리베이트 수수방지 교육을 포함 ○ 제29조(준수 여부 점검) ①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령 준수 여부 점검에 리베이트 수수를 포함 	원안가결
장례식장 운영규정 제정(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장례식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용범위, 시신의 관리, 시설물관리, 수입금 관리 및 이용료 등의 징수, 이용료 감면, 업무범위, 물품구매 등을 명확화 	원안가결

의결사항	주요내용	의결결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정(안)	<p>○ 공주의료원 회계규칙 제75조에 따른 출납 및 보관 등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화</p> <p>- 금고의지정, 약정기간, 금고지정 신청 공고, 금고약정의 해지 등을 명확화</p>	원안가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과년도 의업미수금 결손처분(안)	<p>○ '13년 결산이후 소멸시효가 경과된 의업미수금 징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분(10,975천원)</p> <p>- 2010년도분 : 4,489천원(일반,보험,급여,자보)</p> <p>- 2006년도분 : 6,486천원(자보)/ 누락분</p>	원안가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장례식장 시설사용료 및 감면 승인(안)	<p>○ 장례식장 시설사용료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79 857 1136 969"> <thead> <tr> <th>항 목</th> <th>특실</th> <th>2호</th> <th>3호</th> <th>23호동시</th> <th>안치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시간당</td> <td>23,000원</td> <td>16,000원</td> <td>11,000원</td> <td>20,000원</td> <td>5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등 감면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79 1055 1126 1458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 rowspan="2">항 목</th> <th colspan="5">감 면 내 용</th> </tr> <tr> <th>시설 사용료</th> <th>수의</th> <th>염습료</th> <th>식대</th> <th>영구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본원 사망</td> <td>총장례비용 500만원이상</td> <td>40%</td> <td>20%</td> <td>20%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총장례비용 500만원미만</td> <td>20%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직원소개</td> <td>20%</td> <td>10%</td> <td>10%</td> <td>-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직원가족</td> <td>20%</td> <td>20%</td> <td>20%</td> <td>10%</td> <td>5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직원가족의범위 :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, 본인및배우자의 형제자매</p>	항 목	특실	2호	3호	23호동시	안치료	시간당	23,000원	16,000원	11,000원	20,000원	5,000원	항 목		감 면 내 용					시설 사용료	수의	염습료	식대	영구차	본원 사망	총장례비용 500만원이상	40%	20%	20%	-	-	총장례비용 500만원미만	20%	-	-	-	-	직원소개		20%	10%	10%	-	-	직원가족		20%	20%	20%	10%	50%	원안가결
항 목	특실	2호	3호	23호동시	안치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시간당	23,000원	16,000원	11,000원	20,000원	5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항 목		감 면 내 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시설 사용료	수의	염습료	식대	영구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본원 사망	총장례비용 500만원이상	40%	20%	20%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총장례비용 500만원미만	20%	-	-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직원소개		20%	10%	10%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직원가족		20%	20%	20%	10%	5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료장비 처분(안)	<p>○ 내용연수 경과 및 장비의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한 의료장비를 불용처분</p> <p>(단위 : 천원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79 1765 1152 2000"> <thead> <tr> <th>유형</th> <th>장비명</th> <th>수량</th> <th>처분 사유</th> <th>취득 금액</th> <th>취득 년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의료 장비</td> <td>진단용 방사선 X-Ray</td> <td>1대</td> <td>노후로 사용불가</td> <td>409,000</td> <td>2004</td> </tr> <tr> <td>"</td> <td>내시경장비</td> <td>1대</td> <td>"</td> <td>118,000</td> <td>2004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유형	장비명	수량	처분 사유	취득 금액	취득 년도	의료 장비	진단용 방사선 X-Ray	1대	노후로 사용불가	409,000	2004	"	내시경장비	1대	"	118,000	2004	원안가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유형	장비명	수량	처분 사유	취득 금액	취득 년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의료 장비	진단용 방사선 X-Ray	1대	노후로 사용불가	409,000	200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"	내시경장비	1대	"	118,000	200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